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56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정태호·박 정·이인영

황 희·허 영·이장섭

정일영 · 이성만 · 한병도

전용기 · 김경만 의원

(11일)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 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 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신설(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기술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였음
 -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였음
- 나.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 강화·신설(안 제7조부터 제15조

까지)

-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성과평가·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확대(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 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 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하였음
 -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음
- 라. 신산업 및 기술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 부터 제33조까지)
 - 1) 유망 신산업·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음
 -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 산업·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신설하였음
 -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음

-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 신설·강화(안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
 -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인력·기술· 판로(공공구매)·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 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1)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 1)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안 제51조부터 제55조 까지)
- 1)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지정 근거를 둠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안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 1)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강화하였음
- 차. 부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우선구매/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신산업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고자 하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창업기업 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등과

-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창업기업 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등의 성장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 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 5. 창업기업 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 6. 창업기업 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 7. 창업기업 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 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 협의회에 창업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지원정 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정책협의회, 창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창업지원정책자문단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창업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기업 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 4. 창업기업 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5. 창업기업 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 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협력 촉진
 -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1.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3. 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한다.
 - 1.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 2.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
 - 3.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4. 전년도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 점검
 - 5.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창업지원사

업의 부처간 연계 및 예산반영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6.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각 부처의 창업지원사업 통합 관리
- 7.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창업지원사업을 조정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창업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실적 및 성과,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 보고
- 3.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을 신설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 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기존의 창업지원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 및 관련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 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

- 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 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고 사회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2.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 멘토링
-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 ·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 · 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
-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과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교육사업의 관리· 운영 지원
 -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지정·위탁하는 사항
-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을 확충하고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 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창업교육의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2.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 3. 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 4.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 5. 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 6.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 7. 연령별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 등의 제도, 교재, 규정 및 입시정책 등의 개선
 - 8.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 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 9. 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전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및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 5. 그 밖에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조세 등의 감면
- 3. 그 밖에 창업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 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년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 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제2항의 각 호의 부담금 중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기사용 자의 일시부담금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촉진 등

-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 등(이하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 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본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3. 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 4. 그 밖에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 기술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26조(신산업·기술창업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신산업ㆍ기술창업 분야 창업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 2.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 3.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경 영 지도
 -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

- 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 5. 국내·외 기업과 신산업·기술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 6. 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
- 7.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 8. 신산업ㆍ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9. 그 밖에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조(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신산업·기술창업 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기술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창업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기술창업기업의 발굴·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기술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신산업ㆍ기술창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등의 공동 발굴ㆍ육성
 - 2. 신산업·기술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 3. 사업의 공모·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 4.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 동기술개발
-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 6. 신산업·기술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 7. 그 밖에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 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31조(대학·연구기관 기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기술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 기반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대학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① 대학은 대학내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창업지원 전담조직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운영, 대학 기업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 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 시설 등이 밀집한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 등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창업 기업 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 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 경·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 등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정부는 창업기업 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

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분야별 · 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 2. 창업·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 장연수
-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 5. 그 밖에 창업기업 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4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 창업기업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서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본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

자 유치

-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 · 운영
-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알 선
-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력 촉진
-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 등의 국

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 3. 조세·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 4. 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 7.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재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집행임원 등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성 실경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

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에 한정한다)

- 2.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 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 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 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실경 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의 자료를 조회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장 설립계획에 관한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인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 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본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

-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 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지
-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 17. 「소하천정비법」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

가 또는 신고

-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의 설치허가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

- (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의 신고
-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 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8조(법령 제정·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 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 1.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난 날까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양도한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4.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 난 날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

용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
 -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 제51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 ②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 · 보급
-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 5.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 7.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 8.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9. 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 10.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11.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 1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 13.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14.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15.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 16.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 17.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등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 1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①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 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 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 5. 창업 절차의 대행
-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 운영에 대한 자문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 건을 갖출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일 것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 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자는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 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이 없는 경우
-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미치지 못한 경우
- 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취소
 -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취소
 -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 제5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창업지 원기관과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0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학내 창업지원 전 담조직,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하 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 어야 한다.

-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 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2조(자료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평가
- 3.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 4.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제35조에 따른 금융지원
- 6.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7.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 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 나.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

이익

-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 액 인원: 기획재정부장관
-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 4. 그 밖에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 해당 자료·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

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에 따른 감면 등 기준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 제64조(벌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
-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51조제9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사용하 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5.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였거 나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창업하는 창업기업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유효기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 제4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발급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제5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를 삭제한다.